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87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1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11. 27.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가.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하여 운영중인 하일복지문화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

○ 하일복지문화센터의 주요 시설물인 목욕탕 등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1)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다. 위탁내용

1) 위탁사업명: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

2) 위 탁 기 간: 2025. 1. ~ 2029. 12.(5년)

3) 위 탁 비: 2025년 198,000천 원(군비100%, 2026년 이후 별도 산정)

4) 위 탁 방 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 위 탁 내 용: 하일복지문화센터(목욕탕, 헬스장 등) 운영 및 시설 관리

라. 추진일정

❍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자 모집 공고 2024. 11.~12.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2024. 12.
❍ 수탁업체 선정 2024. 12.
❍ 위・수탁 계약 체결, 공증・공고 2024. 12.
❍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 2025. 1.

마. 기대효과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하일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 복지 증대
❍ 민간위탁 관리로 목욕탕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완화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제출 사유

-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운영 중인 하일복지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

- **(위탁목적)** 하일복지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위탁개요)**

[위탁시설: 하일복지문화센터]

○ 위 치: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665-1번지 외 4필지
○ 규 모: 1,129.4㎡(지하 1층, 지상 2층 / 목욕탕 및 주민공동시설)

[위탁개요]

· 위탁사무: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 2029. 12.(5년)
· 위탁비용: 198백만원(2025년) / 2026년 이후 별도 산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종합검토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며, 전년도 위탁비용(220백만원) 대비 다소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계획된 위탁기간(5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집행기관의 위탁절차 추진에 있어서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시기를 일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11. 27.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